

의안번호	2213188
의 퇴 인	한창민 의원
회 답 일	2025.12.4.
추계번호	25B52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00만원, 2031년 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3,200만원(연평균 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 제12조의6)	6	6	6	6	6	32	6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실제 장래에 발생할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제1항 단서 삭제)	의무규정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조의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신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함(제1항) 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 2.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공단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정한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제1항 단서 신설)	의무규정
4	안 제12조의2 (퇴직연금공단의 설립)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공단은 법인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공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2조의3 (공단의 업무) 신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함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퇴직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3.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의무규정
6	안 제12조의4 (퇴직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제20조에 따른 부담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2조의5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신설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2조의6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함.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함(제2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5.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함.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6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제3항)	의무규정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2조의6 (퇴직연금기금운 용위원회) 신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둠(제1항)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 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 정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 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 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관계 전문가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2명	의무규정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음.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함(제3항)	재량·의무 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제4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함.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5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 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제7항)	의무규정
9	안 제12조의7 (국고 부담) 신설	국가는 매년 공단이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2조의8 (공단에 대한 감독) 신설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u>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단서 신설)</u>	의무규정
12	안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u>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1항)</u>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u>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u> 5의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나 운용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13	안 제21조(계약형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한정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 신설	퇴직연금기금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적립금은 공단이 통합하여 운용함	의무규정
15	안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6. <u>공단</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부칙 제2조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1항)	의무규정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제2항)	
		설립 당시의 공단의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함(제3항)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함(제4항)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봄(제5항)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함(제6항)	재량규정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제7항)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제8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3 11	안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안 제8조(퇴직금제 도의 설정 등) 안 제15조(급여수 준)	×	• 미첨부(안 제4조제1항·제8조 및 제15조)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현행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두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함¹⁾ －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임(안 제4조의제1항)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 또한, 개정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 및 급여수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8조, 제15조) -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관련한 기관부담금 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수에 평균임금과 근무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현 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규모와 이들의 평균임금 및 근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 미대상(안 제4조제3항) - 개정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조의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	• 미대상 - 개정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계약형(안 제4조의2제1호)과 기금형(퇴직연금공단과의 신탁설정계약, 안 제4조의2제2호)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운영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5 16	안 제12조의2(퇴직연금공단의 설립) 안 제12조의3(공단의 업무) 안 부칙 제2조(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의 업무와 공단의 설립 준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공단을 설립하여(안 제12조의2),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퇴직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 - 또한, 개정안의 부칙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단 설립의 세부 계획과 공단설립위원회의 인적 구성, 운영 방식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공단의 설립과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추계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6·7·9	안 제12조의4(퇴직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안 제12조의5(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안 제12조의7(국고 부담)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퇴직연금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안 제12조의4),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면서(안 제12조의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5제6항)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 위탁 대가 지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또한,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매년 공단이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7)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퇴직연금기금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수준 또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동적이므로 현시점에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8	안 제12조의6(퇴직 연금기금운용위원 회)	○	• 공식추계 - 본문참조
10	안 제12조의8(공단 에 대한 감독)	—	• 미대상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단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이나 관리운영비 소요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할 사항으로, 조직 및 정원의 확대는 인력운용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2·13	안 제19조(확정기 여형퇴직연금규약) 안 제21조(계약형 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 미대상 - 현행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방법 변경 제한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계약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21조제1항)이므로,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4	안 제21조의5(퇴직 연금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	—	• 미대상 -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적립금은 공단이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5	안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 미대상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하나, 그 업무범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사업에 한함³⁾ － 개정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으로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공단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범위 변경은 현행 법·제도 전반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1)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3)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민간위원 수) 개정안은 위원회는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과 같음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관계 전문가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 본 추계서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개최
 -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8	8	8	8	8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6	6	6	6	6	32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실제 장래에 발생할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Ⅲ.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장래에 발생할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